**주식양수도 계약서**

양도인들은 대상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양수인들은 양도인들로부터 동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고자 함에 따라 이에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아래 조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 (대상법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법인등록번호 :

**제2조 (매매대상주식)**

매매대상이 되는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수 및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 주식수량

- 주식종류

- 액면가

- 1주당 가격

- 매매대금

- 지분율

**제3조 (주식양수도대금)**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주식양수도 대금을 일금[ ]원으로 한다.

**제4조 (대금지급 시기 및 방식)**

(1) 매매대금의 구성 및 지급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금 [ ]원(매매대금의 10%)

- 잔금 : 금 [ ]원(매매대금의 90%)

(2) 양수인들은 양도인들에게 2000년 00월 00일에 계약금을, 2000년 00월 00일(이하 “잔금 지급일” 또는 “종결일”)에 잔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3)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들은 제5조의 서류를  양수인들에게 교부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도인들 보유주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은 양도인들들이 책임지고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인도 및 필요서류의 인도)**

(1) 양도인들은 본 계약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양수인들에게 제시 후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수인들은 양도인들에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인도 서류목록]

1. 주식 인도증

2. 정관 / 주주명부

3.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4. 주식양도 및 법인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2) 양도인들은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직접 양수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본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야 한다.

(3) 양도인들은 본건 주식에 대하여 잔금 지급 후 양수인들이 요청하는 날까지 양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관계당국에 대한 보고, 신고 및 공시 등은 양도인들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6조 (채권 채무의 정리)**

(1) 양도인들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도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부채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잔금지급일 이전에 귀속하는 기타 제세공과금(각종 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미고지분 포함) 양도인들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양도자의 서약사항 및 고지의무)**

(1) 양도인들은 본 계약 체결 후 본건 사업인수가 완료되는 종결일까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영업활동을 넘어서 다액의 차입이나 채무부담 행위, 회사의 주요 자산의 매각, 임대, 기타의 처분, 자본적 지출, 중요 계약의 체결, 주주와의 거래, 임직원에 대한 보수, 임금, 퇴직금 기타 급여의 결정 등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의 가치, 영업, 재산, 자산, 부채상태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계약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도인들은 양수인들이 본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제반 인, 허가 및 신고수리를 받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공시 등을 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3) 양도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상 양도인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양도인들의 제반 의무를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이행하며, 양도인들들은 기존 고객과의 본건 사업 관계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관계를 유지하고 본건 사업의 영업권을 유지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4) 양도인들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 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양수인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양수인들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양도인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양도인들이 불이행할 때에는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들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양도인들에게 귀속된다. 단,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의 해석)**

양도인들들과 양수인들들 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할 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특약사항)**

(1) 본 계약 후 양도인들은 제5조의 필요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양수인들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잔금 지급일기준으로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양도인들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양수인들의 책임으로 한다.

(3) 양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양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들의 권리행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양수인들의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 및 권리행사 또한 동일하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각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도인들은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4조 (연락처 및 의사표시)**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각 당사자들을 대표한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통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 대표자에게 행하면 양도인들 또는 양수인들 전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양도인들측

성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양수인들측

성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들들과 양수인들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첨 부 : 양도자들 개인 인감증명서(주식 거래용 명기)

                           2019년 7월   일

“양도인들1”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도인들2”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도인들3”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도인들4”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수인들1”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수인들2”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수인들3”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양수인들4”

성 명(상호) (인)

주 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